

인천광역시서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http://www.seo.incheon.kr/>

선	기관위원장
람	

제1514호 2020. 5. 18(월)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6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11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1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일부개정 조례	2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28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32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37

차 례

조 례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 40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 4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49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69호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65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17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 72

규 칙

- 인천광역시서구 규칙 제9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 83
- 인천광역시서구 조례 제9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 86

고 시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 91
- 인천광역시서구 고시 제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 95

공 고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84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6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
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사업인정
(의제)에 관한 주민의견정취 공고 ----- 99
- 인천광역시서구 공고 제7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85호선, 소로1-6호선)사업 실시
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 124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6호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역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제1항의 지역위원회 기능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27조에 따라 설치하는 동 주민자치회에서 할 수 있다.

제9조 본문 중 “2년으로”를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로 한다.

제1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주민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13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부터 다음 연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2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② 지원협의회는 예산관련 전문가, 관련분야 종사자,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제28조 본문 중 “1회에 한하여”를 “한 차례만”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7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법률 및 소송 고문 운영 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가목 중 “도과”를 “지남”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양양”을 “드높임”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기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기등에 관한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사기양양”을 “사기 진작(振作)”으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호 중 “양양”을 “드높임”으로 한다.

제10조제3항제2호 중 “사기양양”을 “사기 진작(振作)”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폭원”을 “너비”로 한다.

제6조(「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8호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 육성 및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사회질서 의식 양양과 치안협력을 위해 조직되어 있는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의 활동과 사업을 지원하여 구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재향경우회(이하 “경우회”라 한다)라 함은 「대한민국재향경우회법」에 따라 조직된 단체를 말한다.

제3조(지원사업 등) 경우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법질서 확립 및 홍보사업
2. 치안 협력 및 지원 사업

3. 학교폭력 예방 등 구민안전을 위한 공익활동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또는 경비

제4조(보조금의 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경우회에서 추진하는 제3조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에 따라 사업내용 등을 특정한 경우에 한한다.

② 제1항의 보조되는 사업비는 사업목적 외의 용도로는 집행할 수 없다.

제5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경우회는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6조(정산보고 등) ① 경우회는 제4조에 따라 지원된 보조금에 대하여 정산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다.

제7조(준용) ①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보조금지원 및 결산 등의 세부내용 및 절차는 「지방재정법」 및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기타 경우회의 육성과 지원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59호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제4호 및 제5호 및 제8호에”를 “제1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탈루된 세외수입(과징금·이행강제금·과태료·개발이익환수금에 한정)을 발굴하여 부과한 경우에는 그 징수액의 100분의 5

제3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8호”를 “제8호부터 제9호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제11조로 하고,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9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구청장은 대리인 없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또는 이의신청(이하 “청구등”이라 한다)이 접수된 경우 그 청구등 세액이 1천만원 이하인 사건에 대하여는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에게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의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이하 “선정대리인”이라 한다) 제도를 안내하여야 한다.

②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고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대리인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인·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선정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대리인은 임기가 종료하더라도 임기만료 전에 지정된 사건에 대한 대리 업무를 계속 수행하여야 한다.

② 선정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다른 사람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③ 구청장은 선정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각종 위원

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따른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2조 위반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 ④ 구청장은 선정대리인이 지식기부를 통해 불복업무를 대리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1호

인천광역시 서구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구민의 건강을 감염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감염병의 발생과 유행을 방지하고, 그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 및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을 말한다.
2. “감염병환자”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감염병 환자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기본적 권리를 보호하며,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이하“주민”이라 한다)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방역 대책
2.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계획의 수립 및 시행
3. 감염병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감염병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의 양성
5. 감염병의 치료 및 예방을 위한약품 등의 비축
6. 그 밖에 법에서 규정한 사업 및 감염병 예방·확산 방지에 필요한 사업

③ 구청장은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국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및 의료인단체와 감염병의 발생 감시·예방을 위하여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야 한다.

제4조(의료인 등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 관내(이하 “구 관내”라 한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은 구청장이 수행하는 감염병의 발생 감시 및 예방·관리·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구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구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고, 구청장은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구민은 의료기관에서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③ 구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구청장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의 기본계획에 따라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감염병 예방 및 관리의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주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업계획 및 추진방법
3. 전문 인력의 양성 및 감염병 위기대응 역량의 강화 방안
4. 감염병 통계 및 정보의 관리 방안
5. 그 밖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감염병 비상대책반 구성) ① 구청장은 법 제7조에 따른 시행계획의 시행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감염병 비상대책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의 「감염병 비상대책반」 운영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감염병 비상대책반」의 구성과 운영 및 지원 등의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역학조사) ① 구청장은 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지체 없이 역학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역학조사를 하기 위하여 역학조사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회피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3.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

④ 제1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내용과 시기·방법 및 제2항에 따른 역학조사의 구성 및 임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예방접종 실시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법 제24조제1항의 질병에 대하여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임시예방접종을 하여야 한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구청장에게 예방접종을 실시할 것을 요청한 경우

2. 그 밖에 구청장이 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예방접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예방접종업무를 영 제20조에 따라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10조(감염병 관리기관의 지정 등) ① 구청장은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 및 종합병원을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고 감염병환자 등을 진료하는 시설(이하 “감염병 관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등 긴급상황 발생 시 감염병 관리기관에 진료개시 등 필요한 사항을 지시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제11조(감염병 위기 시 감염병 관리기관 설치 등) ① 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 등을 모두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기간 동안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와 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 및 운영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염병 관리기관에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 관리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다.

제12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소 거부 금지) 감염병 관리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감염병환자 등의 입소를 거부할 수 없다.

제13조(감염병환자 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 등은 감염병 관리기관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감염병 관리기관의 병상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감염병환자 등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염병 관리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에서 입원치료하게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서 치료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2.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

제14조(감염병에 관한 강제처분) ① 구청장은 해당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감염병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선박·항공기·열차 등 운송수단 또는 그 밖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진찰 결과 감염병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동행하여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킬 수 있다.

1. 제1급감염병
2. 제2급감염병 중 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수막구균 감염증, 폴리오, 성홍열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3. 제3급감염증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감염증

4. 세계보건기구 감시대상 감염병

② 제1항에 따라 조사·진찰·격리·치료 또는 입원 조치를 하거나 동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제15조(감염병환자 등의 입원 통지) 구청장은 법 제41조에 따른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입원치료 대상자와 그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건강진단 및 예방접종 등의 조치)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강진단을 받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예방접종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감염병환자 등의 가족 또는 그 동거인

2. 감염병 발생지역에 거주하는 사람 또는 그 지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서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3. 감염병환자 등과 접촉하여 감염병에 감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
제17조(감염병 유행에 대한 방역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감염
병 전파를 막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감염병환자 등이 있는 장소나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가. 일시적 폐쇄

나. 일반 공중의 출입금지

다. 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

라. 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 정지

3.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4.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다고 의심되는 물건을 사용·접
수·이동하거나 버리는 행위 또는 해당 물건의 세척을 금지하거나 태우
거나 폐기처분하는 것

5.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6. 일정한 장소에서 세탁하는 것을 막거나 오물을 일정한 장소에서 처리하

도록 명하는 것

제18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법 제49조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9조(손실보상) 구청장은 법 제37조에 따른 의료기관이 감염병 관리시설로 사용됨에 따라 손해를 입은 해당 의료기관의 경영자와 법 제49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소독이나 그 밖의 조치로 손해를 입은 건물의 소유자 및 임차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손해에 상당하는 비용의 일부를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교육 및 홍보) ①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구민에게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감염병 관리기관으로 지정한 경우 구민에게 즉시 홍보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감염병 발생 시 상황과 대응방법 등의 관련 정보를 구 홈페이지를 통하여 구민에게 신속하게 홍보하여야 한다.

제21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감염병 예방, 효율적 치료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지역 의료기관 등과 모든 정보를 공유하고 긴밀한 의료네트워크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2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이하 “동 협의체”라 한다)란 관할 지역 내의 사회보장 대상자 발굴, 자원발굴 및 연계, 지역사회보호체계 구축·운영, 그 밖에 지역주민의 사회보장 증진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7.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연합회”(이하 “동 협의체 연합회”라 한다)란 각 동 협의체 위원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연계협

력을 위한 조직을 말한다.

제5조제1항 중 “포함, 성별을 고려하여”를 “포함한”으로, “구성한다”를 “구성하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장 중 대표로 선출된 1명은”을 “연합회 간사는”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제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동 협의체 연합회) ① 동 협의체 연합회는 각 동 협의체 위원장으로 구성하며, 대표위원장 1명, 간사 1명을 둔다.

② 동 협의체 연합회의 대표위원장은 호선하고, 간사는 대표위원장이 지명한다.

③ 동 협의체 연합회 대표위원장은 대표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되고 간사는 실무협의체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④ 동 협의체 연합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동 협의체의 공동사업개발 및 제안
2. 동 협의체 간 정보공유 및 역할 조정, 연계, 협력도모
3. 구 협의체와 동 협의체의 연계협력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3호

인천광역시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구에 주소를 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 지역사회에 원만히 정착하여 자립생활 할 수 있도록 생활안정 및 권익증진 등을 위하여 그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이하 “영주귀국주민”이라 한다)이란 러시아 사할린(이하 “사할린”이라 한다)에 강제 동원되었거나 그곳에서 출생 또는 거주한 한인 및 그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으로서 국가의 사할린한인 영주귀국 사업에 따라 서구(이하 “구”라 한

다)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이 지역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집중거주 지역의 생활편의 등 환경개선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영주귀국주민 1세대
2. 제1호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 (이 경우 대한민국의 국적취득 전이라도 구에 거소를 둔 사람이어야 한다.)

제5조(지원사업) ① 구청장은 제4조의 지원대상자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영주귀국주민에 대한 관심 제고 및 인권보호 교육·홍보
2.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3. 구민과 영주귀국주민 상호 간 이해와 소통을 위한 교류
4. 의료기관, 법원 방문 등 언어상 한계 극복에 필요한 통역·번역 서비스 제공

5. 건강생활에 필요한 응급구호 등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6. 문화·체육활동 기회 제공
 7. 영주귀국주민을 방문하는 후세대를 위한 한국어 및 역사·문화 교육
 8. 국내 다른 지역에 거주하는 가족, 친척 등과 만남의 기회 제공
 9. 영주귀국주민의 사할린 등에 남아있는 친족 등과의 교류에 필요한 경비 지원
 10.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쉼터의 설치 및 운영 지원) ①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중 노년층의 건강한 여가생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서구 영주귀국 사할린한인 주민 쉼터(이하 “쉼터”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쉼터의 설치 및 운영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7조(포상) 구청장은 영주귀국주민 지원업무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이나 법인·단체 등에 「인천광역시 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4호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차별과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장애”란 신체적·정신적 손상 또는 기능상실이 장기간에 걸쳐 개인의
일상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초래하는 상태를 말한다.

2. “장애인”이란 제1호에 따른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장애인 차별금지”란 누구든지 장애 또는 과거에 장애가 있었거나 장애가 있다고 추측됨을 이유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것을 말한다.
4. “장애인 인권보장”이란 장애인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확대시키는 것을 말한다.
5. “장애인 관련자”란 장애인을 돕기 위한 목적에서 장애인을 대리·동행하는 자로서 장애아동의 보호자 또는 후견인 그 밖에 장애인을 돕기 위한 자임이 통상적으로 인정되는 자를 포함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장애인 및 장애인 관련자 (이하 “장애인 등”이라 한다)에 대한 모든 차별과 인권침해를 방지하고, 장애인 등의 권리를 구제할 책임이 있으며, 장애인 차별과 인권침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하여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해야 할 책무를 지닌다.

② 구청장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장애인 차별금지와 인권보장에 관한 실태 조사
2. 정당한 편의제공에 관한 사항
3. 장애인 차별과 인권보장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장애인을 비롯한 구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에 관한 사항
5. 여성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과 폭력피해 여성 장애인을 위한 정책

6.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가 제공될 수 있는 기술적·행정적·재정적 지원
7. 그 밖에 장애인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필요한 사항

제4조(장애인 등의 권리와 구민의 책무) ① 모든 장애인은 차별과 인권침해가 없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진다.

② 장애인을 비롯한 서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의 계획과 정책 전반의 정보에 대하여 알 권리를 가진다.

③ 구민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을 위하여 차별금지과 인권보장을 위해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기본계획 수립 등) ① 구청장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 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목표, 시책방향
2. 목표 달성을 위한 분야별·단계별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정당한 편의제공을 위한 장애 유형별 세부 시책
4. 장애인차별금지과 인권보장에 관한 정책과 실태조사를 위한 지표 개발
5. 장애인차별 및 인권침해 실태와 인권보장 사례
6.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구민 참여 활성화와 지원 방안

7. 정책 및 시책 추진을 위한 행·재정상의 지원방안

8. 그 밖에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에는 장애인 인권보장 관련 전문가 및 장애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예산의 지원) 구청장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
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5호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구청장은 아동권리가 존중되는 아동친화적인 사회기반을 조성하기 위
해서 아동권리 교육을 위한 전문 강사를 자체 양성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전문적이며 지속 가능한 아동권리 교육기반을 구축하기 위하
여 매년 일정한 자격기준을 충족한 사람을 아동권리교육 전문 강사로 위촉

할 수 있으며, 이때 강사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아동 대상 아동권리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2. 아동권리지킴이 등 아동권리 옹호자로서의 아동권리 증진활동
- ⑤ 강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
1. 스스로 그 직의 위촉 해제를 원할 경우
 2. 「아동복지법」 제17조에 해당되어 강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강사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6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수립 및 시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사회통합과 창의적인 문화도시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문화다양성”과 “문화적 표현”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다.

2.“문화적 차별”이란 개인이나 집단의 국적, 민족, 인종, 종교, 언어, 지역, 성, 세대, 연령, 학력, 출신지, 신체적 능력 등의 차이에 의한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모든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제한 혹은 금지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문화다양성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문화다양성에 기반을 둔 문화활동을 권장·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 및 조사·연구, 문화다양성의 증진을 위한 문화활동의 지원,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지역 간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에 따른 문화적 차이를 이유로 문화적 표현과 문화활동의 지원이나 참여에 대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문화적 관용으로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구민의 권리와 책무) 구민은 문화적 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가지며, 다른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적 표현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①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실행계획) ① 구청장은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있어서 구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관내 문화다양성에 대한 지역의 실태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문화다양성 실태조사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다양성 관련시설 운영 및 활동 현황
2.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및 제도에 관한 사항
3. 문화다양성과 관련한 사회적 인식에 관한 사항
4. 주요 시책사업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관한 정책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구청장은 실태조사를 문화다양성에 관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춘 연구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8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학술, 체육, 문화산업 등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다음 각 호의 활동이나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위한 문화시설에 대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다양한 문화의 공존과 조화를 위한 활동
2. 다양한 문화의 표현 및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활동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하려는 경우 관련 기관·단체 또는 전문

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방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 교육) 구청장은 교사, 청소년, 그 밖에 문화다양성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에게 다음 각 호와 같은 문화다양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 문화다양성 관련 조약, 법규 및 정책의 내용
2. 지역의 다양한 문화와 민속
3. 문화적 관용 및 문화다양성 가치 실천의 구체적 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다양성의 보호와 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내용

제10조(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동지원) 구청장은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1조(사무의 위탁) 구청장은 이 조례에 따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다양성의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유관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권고 등) 구청장은 문화적 차별 행위에 대하여 공공기관, 단체, 개인 등에게 시정 혹은 개선을 요청하는 권고를 할 수 있으며 권고의 구체적인 이행을 위한 지원 및 점검을 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7호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고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교육”이란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교육을 말한다.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이란 문화예술교육 관련 교원 외에 문화예술교육에 관한 기획·진행·분석·평가 및 교수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인천광역시 서구의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문화예술교육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교육을 하는 교육시설 또는 문화예술단체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전문인력 양성 지원)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프로그램 개발
2.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재교육
3.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지원센터의 설치·운영)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문화예술교육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행
2. 문화예술교육 기반 및 관계망 구축
3.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 및 개발
4.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학술 연구 및 조사

5.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및 재교육
6. 문화예술교육에 필요한 시설·장비의 확충 및 정비
7. 문화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국내외 협력 및 교류사업
8. 그 밖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지원센터 운영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예술교육 또는 문화예술진흥이나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지원센터 운영을 위탁하고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1년을 연장할 수 있다.

제8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과 관련하여 예산이 지원된 경우에는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지도·감독한다.

② 지원센터에서는 구청장이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문화예술교육 관련 지원예산을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하거나 이미 교부된 지원금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8호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인천광역시 서구 체육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구민의 건강증진과 건전한 여가 선용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체육시설”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에서 건립한 체육시설을 말하며, “부대시설”이라 함은 이에 부수된 필요한 설비와 비품을 말한다.
2.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의 체육시설을 본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사용자”라 함은 제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는 자를 말하며 사용료라 함은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4. “전용사용자”라 함은 체육시설 및 부대시설 전체를 일정기간 전용으로 사용하는 자를 말하며, “전용사용료”라 함은 전용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이용자”라 함은 개인연습, 경기연습, 체력단련 등을 목적으로 하는 자를 말하며 이용료라 함은 이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 이 조례에서 정하는 구 체육시설(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의 기능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 (사용신청, 허가 등)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② 체육시설을 전용으로 사용코자 하는 자는 사용자의 주소·성명·사용시설·사용목적·사용기간을 별지서식의 신청서에 명시하여 사용일 10일 전까지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목적이 긴급을 요할 때에는 그 신청기일을 줄일 수 있다.

③ 개인이 이용(연습사용, 체력단련 등)코자 할 때에는 이용료를 납입하고, 이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에 갈음한다.

④ 구청장은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체육분야의 강습프로그램을 개설·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회원모집 및 회원권을 발급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 우선순위)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 이상일 때

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를 따른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인천광역시체육회, 인천광역시서구체육회, 인천광역시장애인체육회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경기대회 및 행사
3. 구 소속 체육회, 공공스포츠클럽이 주최 또는 주관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4. 직장 및 일반동호인 등이 참여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육활동 및 행사

제6조 (시설의 개방) ① 체육시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구민건강증진을 위한 체육활동장으로 개방한다.

② 체육경기를 주최·주관하는 기관이나 단체, 체육시설의 관리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체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장애인의 체육시설 사용에 있어 시설별로 일정비율을 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각 시설별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으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개방 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 등
2. 프로그램의 종류 및 이용 방법
3. 시설 종류별 사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⑤ 구청장은 개방하고자 하는 체육시설에 구민이 이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운동기구를 배치하여야 하며, 제4항 각 호에 규정된 내용을 게시판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체육시설의 활용실태를 매분기별로 점검하고, 활용도 제고를 위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개방의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을 때 체육시설의 개방을 제한할 수 있다.

1. 국가, 인천광역시 또는 구의 행사
2. 시설의 개수·보수 등 시행
3. 시설을 이용 할 때 현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8조 (사용 제한)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체육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
2. 시설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공익상 부적당 하다고 인정될 때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9조 (입장의 거절 및 퇴장)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장을 거절 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중에 유해한 행위를 하는 자 또는 전염병 질병이 있음이 확인된 자
2. 술에 만취된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하거나 방해될 물품을 휴대한 자
4. 그 밖에 입장을 거절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자

제10조 (사용 시간) ① 체육시설의 기능에 따라 사용시간을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용허가 시간은 별표 2와 같다.

② 사용기간은 경기나 행사의 관련 시설물 등을 설치한 때부터 그 시설물 등의 철거를 완료한 때까지로 본다. 이 경우 행사 또는 경기없이 존치되어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11조(사용료 등의 징수) ① 구청장은 제4조 및 별표 1의 사용자에게 별표 3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6조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체육시설의 사용료 등 결정 및 징수방법은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체육시설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체육시설별 활용여건에 따라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장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준용 및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사용료 등의 감면) ①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조례로 정하는 행사나 활동은 100분의 80을 감면한다.

③ 비영리 목적으로 공공기관이 주관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100

분의 50을 감면한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자에 대하여 사용료 등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수영장, 헬스장의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의 구성원은 100분의 3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등록장애인 및 노인은 100분의 50 범위 안에서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 유공자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4.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구성원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과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6. 「노인복지법」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65세 이상의 노인

⑤ 수영장 이용자에 한하여 12세 이상 55세 이하 가임기 여성은 생리적인 현상으로 매월 일정기간 동안 수영장 이용이 불가능함에 따라 수영장 월 이용료의 100분의 10을 감면할 수 있다.

⑥ 저탄소 녹색성장 활성화를 위하여 그린카드로 사용료 등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를 감면할 수 있다.

⑦ 중복 감면되는 경우에는 감면 비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구청장은 이미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제11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사용 신청을 취소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징수한 사용료를 반환한다.

가. 사용일 5일 전까지 취소 : 전액 반환

나. 사용일 4일 전부터 1일 전까지 취소 :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다. 사용개시일 이후 취소 :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퍼센트 공제 후 반환

2. 체육시설의 사정에 따라 사용이 취소·정지되었을 경우 : 전액 반환

3.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불가항력적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 전액 반환

제14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설치)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부대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경미한 시설의 설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사용자의 부대시설에 대한 설치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사용자는 사용기간 종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사용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사용목적 또는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구청장이 직접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 하게 된 경우

4.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사용이 불가능할 경우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용을 일시정지, 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시설의 안전상 현저한 위해가 발생할 때

2. 장내 질서유지가 심히 어려울 때

② 전용사용에 따른 체육시설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폐기물은 사용자가 수거하여야 한다.

제16조(운영 위탁 등)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체육시설의 운영을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구청장이 설치한 구 공단, 체육 관련 단체 또는 민간 비영리법인 및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탁자와 위탁방법, 기간, 조건, 관리책임 및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재계약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연장 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2회 이상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위탁하는 허가기간은 연장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수탁자 선정기준) ① 수탁자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구청장은 수탁대상자를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

의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 하여야하며, 전문가 등을 포함한 민간위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한다.

1. 체육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인력·기구·장비·시설 및 기술수준
2.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및 사무처리 실적 등

제18조(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관계 공무원과 구의회 의원, 체육 관계자 및 전문가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의 구성 시기는 공개모집 공고 전까지 하며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장은 사업계획서 등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인에게 필요한 소명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9조(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① 심사대상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 ② 위원이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를 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위원회 의결로 해당 위원을 심의에서 제척할 수 있다.
- ③ 위원은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으면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다.
- ④ 위원은 제1항의 사유에 해당되면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20조(지원) 구청장은 제16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을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지역사회 체육의 활성화 및 전문화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제20조에 따른 지원금 및 대여 받은 공유재산을 위탁받은 체육시설의 운영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관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수탁 운영하는 시설을 변경하거나 그 시설과 관련되어 새로운 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미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및 구청장의 지시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사용료 등을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22조(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게 체육시설의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사무소 및 수탁 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거나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3조(위탁의 철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위탁을 철회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21조를 위반한 경우
2. 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3. 수탁자가 수탁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4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체육시설의 기능 및 위치(제3조 관련)

시 설 명	기 능	위 치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풋살장, 농구장, 족구장, 족구장, 테니스장, 다목적운동장, 주민운동시설, RC경기장 등 체육활동 - 체육분야 강습 프로그램 	서구 청라동 7-17

[별표 2]

체육시설의 개방시간 및 휴관일(제6조 관련)

시 설 명 (소재지)	개방시간	휴 관 일	기 타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서구 청라동 7-17)	<p style="text-align: center;"><평일> : 06:00 ~ 22:00</p> <p style="text-align: center;"><주말(토,일)> : 09:00 ~ 20:00</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절(신정, 구정, 추석) 연휴 ※ 대체휴무일 포함 ● 임시공휴일, 근로자의 날 ● 그 밖에 보수공사 등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날 	

[별 표 3]

□ 체육시설 사용료(제11조 관련)

○ 북청라대교 교량 하부 체육시설

시설명	사용기준	금액(원)	비 고
배드민턴장	2시간(1인)	1,000	조명 사용료 별도 (10,000원) - 2시간 기준 -
	월 회비(1인) 2시간 1일 1회	20,000	
테니스장	2시간(코트당) 1일 1회	2,000	
	월 회비(1인) 2시간 1일 1회	30,000	
	월강습(평일) 연습구, 재료비 포함	10,000	
풋살장	2시간(면당) 1일 1회	5,000	
족구장	2시간(면당) 1일 1회	1,000	
농구장	2시간 1일 1회	1,000	
RC경기장	2시간(면당) 1일 1회	1,000	
다목적 운동장, 주민운동시설		무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69호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에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설립의 촉진 및 그 성장기반을 조성하여 1인 창조기업을 육성·지원함으로써 지역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1인 창조기업이란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기업으로서 인천광역시 서구에 사업자등록을 한 기업을 말한다.

제3조(1인 창조기업의 범위) 1인 창조기업의 범위는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및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및 제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으로 본다.

제4조(1인 창조기업의 인정 제외)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1인 창조기업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였을 경우
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제5조(1인 창조기업 육성·지원 계획)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지원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1인 창조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방향
2.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에 관한 사항
3. 1인 창조기업의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1인 창조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지원 사업 등)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의 성장기반 조성 및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의 전문성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교육훈련 지원

2. 사업 성공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를 가진 1인 창조기업의 선정 및 아이디어의 사업화 지원
3. 1인 창조기업의 사업 중 구청장이 특화시키고자 하는 사업
4. 1인 창조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기술 및 인력의 국제교류, 국제행사 참가 등의 지원 사업
5. 1인 창조기업의 성공사례 발굴 및 포상, 홍보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공고하는 사업

제7조(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의 설치 등) ①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및 1인 창조기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문 인력과 시설을 갖춘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단, 지원센터의 명칭은 1인 창조기업의 성격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작업공간 및 회의장 제공
2. 1인 창조기업에 대한 경영·법률·세무 등의 상담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운영장비 제공
4. 지원센터 운영에 따른 필요 물품 제공
5. 그 밖에 구청장이 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운영의 위탁)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인 창조

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전문성과 의지를 갖춘 창업관련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탁기관의 선정 및 지휘·감독은 「인천광역시 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따른다.

③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수탁자에게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정기적으로 보고하게 하거나 담당부서로 하여금 수탁자의 운영 실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조세에 대한 특례)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0조(위원회의 설치) 구청장은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정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또는 심의한다.

1.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1인 창조기업 관련기관 및 단체 등에 대한 중요한 재정지원 사항
3.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에 필요한 사항
4. 1인 창조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1

인 창조기업 업무 담당국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의원 1명
2. 1인 창조기업 담당 국장
3. 1인 창조기업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또는 창조산업 각 분야의 전문가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그 직의 재직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1인 창조기업 업무담당으로 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소집을 요구한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간사는 회의결과에 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질병이나 장기 출장 등의 사유로 위원의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3. 그 밖에 부적절한 이해관계 연루 또는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15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6조(자문단 구성 등)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에 입주한 1인 창조기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하여 창조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4~6명으로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으며, 운영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정한다.

② 자문단은 다음 사항을 자문·지원한다.

1. 지원센터 입주회원에게 대한 정기적인 멘토링
2. 지원센터 입주회원 관리에 따른 주요사항 자문

제17조(예산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위원회와 자문단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위원회 및 자문단의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준용) ①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업비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인천광역시 서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조례 제1770호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서구 주민의 교통편익 증진을 도모하고 대중교통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한정면허”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운송할 여객 등에 관한 업무의 범위나 기간을 한정하여 받은 면허를 말한다.

2. “광역급행형 시내버스”란 시행규칙 제8조제4항제1호에 따른 광역급행형 운행 버스를 말한다.
3.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이하 “운송사업자”라 한다)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받아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4. “수익성이 없는 노선”(이하 “비수익노선”이라 한다)이란 버스의 운송수입금이 제6조에 따라 산정된 운송원가보다 적어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을 말한다.
5. “적자손실액”이란 운송수입이 운송원가 산정 용역에 따른 운송원가 보다 적어 발생한 손실액을 말한다.

제3조(재정지원) ①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한정면허를 얻어 서구를 기점으로 하고 버스 운행 및 주요 정류소가 서구에 있는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운송사업자가 적자손실액에 대한 재정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은 비수익노선을 1년 이상 운행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적자손실액의 50% 이내로 한다.

제4조(운송원가 산정용역 실시) ① 구청장은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적자손실액을 합리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운송원가 산정용역을 할 수 있다. 다만, 국토교통부 또는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광역버스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실시할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운송원가 산정용역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인건비
2. 연료비(유가보조금 및 천연가스연료비 보조금은 제외한다)
3. 차량정비관리비
4. 복리후생비
5. 차량보험료
6. 그 밖의 비용

③ 제2항제4호의 복리후생비 중 접대비 등 운송과 무관한 경비로 사용된 것은 운송원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지원을 받고자 하는 운송사업자는 복리후생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의 신청) ①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운수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1호서식의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와 그에 따른 붙임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 및 성명(법인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
2. 사업면허의 종류, 날짜 및 면허번호
3.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유
4. 적자손실액
5. 그 밖에 해당 사업의 타당성을 설명하는 자료

② 운송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변경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신청서 및 그에 따른 붙임서류를 변경·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신청서 및 붙임서류에 대해 보완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적자손실액 산정) ① 운송사업자가 재정지원을 신청할 때에는 제4조의 사항을 포함한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을 산정하여 적자손실액에 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송수입금 산정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운송수입금은 현금·카드 등 운행수입, 버스운송매체를 통한 광고수입 등 모든 수입을 계상하여야 한다.
2. 운송수입금은 학생 및 국가유공자 등의 각종 공적할인보조금과 환승할인보조금 및 국가와 시의 지원 금액을 포함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② 운송사업자는 운송원가 및 운송수입금의 객관적인 산정과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하여 서구가 정한 회계처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의 방법 및 절차) ① 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그 지원여부를 결정한다.

1. 재정지원의 타당성 및 추진사업의 실현가능성
2. 적자손실액의 적정성
3. 지원가능한 자금의 규모 등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결정에 따라 재정지원을 받는 자에게

지원받은 재정자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인천광역시 서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보조 등에 관하여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재정지원 받은 자금을 제2항에 따른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재정지원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8조(재정지원 사후관리) ①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에게 지원금의 적정사용 여부 등을 수시로 확인 또는 검사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정지원을 받은 자는 구청장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매년 비수익노선 운행에 따른 지원 보조금의 지급내역 및 운송원가의 항목별 산정결과, 경영 및 서비스 평가의 항목별 결과를 업체의 영업비밀과 관련되지 않은 범위에서 구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 중단) 구청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할 경우에는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원된 보조금을 반환할 것을 명하여야 하며, 지원금을 환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운행한 경우
2.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을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대로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4.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재정지원에 대한 조사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6. 그 밖에 재정지원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경우

제10조(재정지원 심의위원회 설치 및 기능) ① 구청장은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의 재정지원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을 자문한다.

1. 재정지원 기준과 방법에 관한 사항
2.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제도운영 및 서비스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한다. 당연직 위원은 교통분야 관련 국장, 서부경찰서 경비교통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며,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1. 서구의회 의원
2. 교통전문가, 교통관련 대학교수·연구기관 연구원
3. 공인회계사, 언론계, 법조계, 시민단체 등 직능대표
4. 그 밖에 교통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회는 운수업체나 운수조합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진술을 들을 필요가 있을 경우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장) 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구 또는 유관 기관 공무원인 경우에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해촉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4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개최일 5일 전까지 회의 일시, 장소, 안건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회의과정이나 직무수행 상 알게 된 사항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② 위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제16조(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임한 경우
2. 제15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3. 위원이 사망, 질병 등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의 행위로 위원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된 경우

제17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에 관여하지 못한다.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관계에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이 당사자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위원이 해당 사항에 관하여 용역을 수행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사항의 심의에서 회피할 수 있다.

제18조(간사와 서기)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정책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교통정책 담당공무원이 된다.

제19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직접 그 업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규정) 이 조례 제3조제1항의 비수익노선을 운행하는 광역급행형 시내버스운송사업자의 재정지원 신청은 공포일 이후 1년 이상의 운행실적이 있는 경우만 할 수 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89호

어려운 한자어 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등 일부개정규칙

제1조(「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5조제2항 단서 중 “도말”을 “지워 없앴”으로 한다.

제2조(「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금권등의 관리 규칙」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미연에”를 “미리”로 한다.

제10조 중 “기장”을 “장부에 기록”으로 한다.

제3조(「인천광역시 서구 자체감사 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자체
감사 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4호 중 “부책”을 “장부”로 한다.

제4조(「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사기양양”을 “사기 진작(振作)”으로 한다.

제5조(「인천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인천광
역시 서구 기금관리 기본 조례 시행규칙」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계리”를 각각 “회계처리”로 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이 재 현

2020년 5월 18일

인천광역시 서구 규칙 제990호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자본시장법”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제13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통지) 조례 제9조제3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정 결과 통지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14조(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 명세) 조례 제9조제6항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정 사건의 기록·관리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및 제1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	-----	------	----

신청인 (청구인)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접수번호				
처분내용	통지된 사항 또는 처분의 내용(과세처분인 경우에는 연도, 기분, 세목 및 세액 등을 기재합니다)			
	연도	기분	세목	부과액

본인은 위 접수 건과 관련하여 대리인 선정 신청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함을 확인합니다.

1. 청구·신청인(배우자 포함)의 종합소득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소유 재산의 가액이 5억원 이하일 것
2. 법인이 아니고 법 제93조에 따른 대리인이 없을 것
3.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가 아닐 것
4.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의 금액이 1천만원 이하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일 것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의 지정을 신청하며, 인천광역시장이 신청인의 위 신청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청구인)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귀하

신청(신고)인 제출서류	1. 소득금액증명(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다만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2. 가족관계증명서	수수료 없음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1. 「지방세징수법」 제8조에 따른 출국금지 대상자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명단공개 대상자 2. 소유 재산(배우자의 소유 재산 포함)의 가액 88	

■ 인천광역시 서구 구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인천광역시 서구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신청 결과 통지

○ 신청인 : ○○○ 귀하

1.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는 (재산·소득요건 미충족)의 사유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2.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귀하가 '00.00.00. 제출한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선정 신청서」를 검토한 결과 귀하의 신청내용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과 같이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을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 서구 선정대리인

성 명		자 격	
사 무 실			
연 락 처	(전화)		, (휴대폰)

2)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지정 내역을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년 월 일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관인생략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78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1조에 따라 도로 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고 시 일 : 2020. 5. 18.
2. 고시방법 : 홈페이지 및 구보
3. 고시내용 : 도로구간 변경에 관한 사항(붙임 참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 토지정보과 주소정보팀(☎032-560-483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구간 변경 조서

연번	내역	도로명	기 점		종 점		중심선	길이 (m)	폭 (m)	기초 간격 (m)	기초번호		관할 행정구역	도로구간 변경 고시일	유사도로명과 동일도로명	도로구간의 변경 사유
			읍면동	지번	읍면동	지번					시작	끝				
1	기존	가현로117번길	마전동	산89-1	마전동	237	도면 참조	750	8	20	1	72	검단동	2020.05.18.	없음	도로구간 연장
	변경		마전동	산89-1	마전동	산97-6		890	8	20	1	90				
2	기존	봉수대로501번길	신현동	207-5	원창동	407-1	도면 참조	1051	22	20	1	104	신현원창동 청라1동	2020.05.18.	없음	도로구간 연장
	변경		신현동	207-5	청라동	1-1315		1173	22	20	1	116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가현로117번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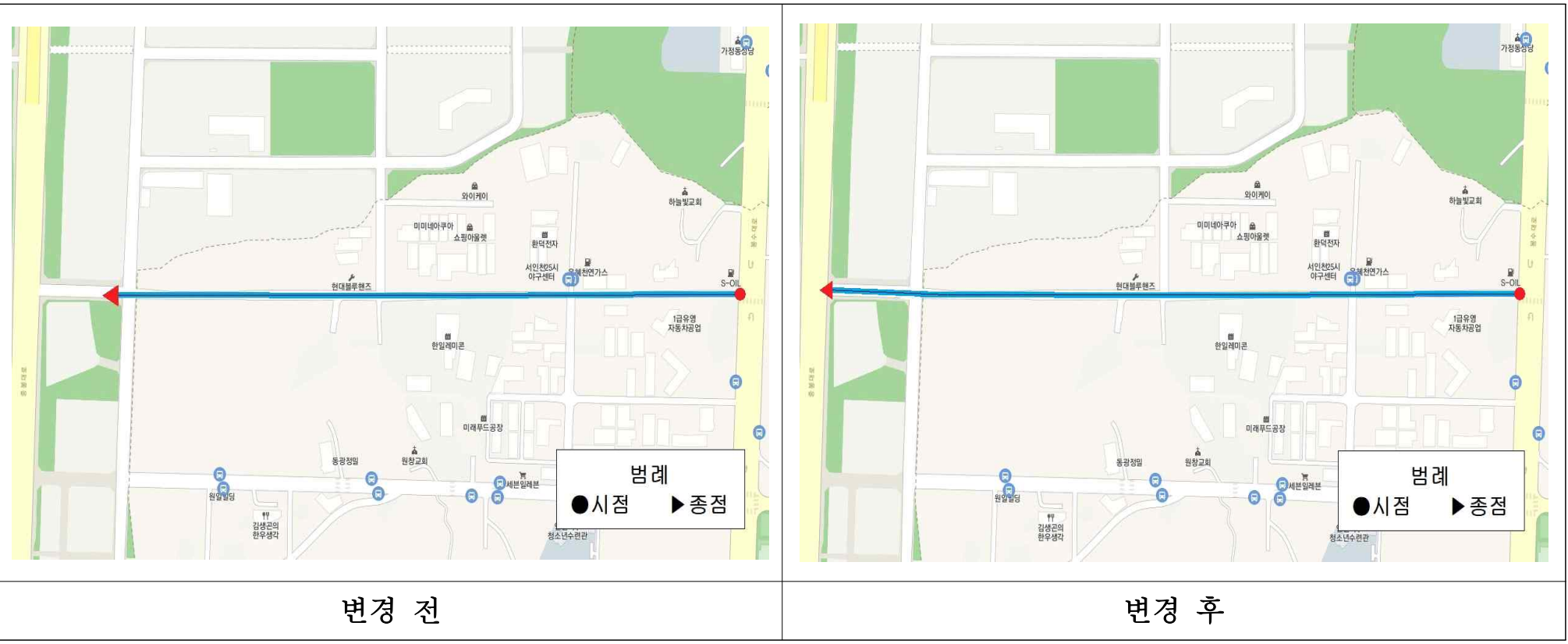


변경 전



변경 후

○ 도로구간 변경 전·후 도면 (봉수대로501번길)



변경 전

변경 후

인천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0-80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8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0.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부여·폐지 도로명주소 : 인천 서구 검단로 859-3 외 25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도 로 명 고 시 일	도 로 명 부 여 사 유
		별 도 열 람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시 서구청 토지정보과(☎560-4830)에 문의 또는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0.05.18일자로 고시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의3 및 제9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제7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 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사

고시일 : 2020-05-18

연번	지번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50, 185-2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3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2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63, 185-5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2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3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62, 185-7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15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4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59, 185-55,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19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5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72, 185-6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17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6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50, 185-24,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5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7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63, 185-52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4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8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62, 185-73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16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9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55, 185-59,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20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10	인천광역시 서구 불로동 185-72, 185-60,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859-18 (불로동, 온누리캐)	20090710	검단이가 검단으로 변천한 것으로 옛 지명 부여 및 검단신도시 중심을 가로 지르는 도로	온누리캐슬
11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동 77-18	인천광역시 서구 차오름로 105 (청라동)	20101111	차오름은 청라경제자유구역이 박차고 힘껏 날아오르는 기상처럼 발전하라는 의미에서 부여	
12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394-54	인천광역시 서구 북항단지로 119 (원창동)	20190121	북항배후단지 중앙을 통과하는 도로	
13	인천광역시 서구 미전동 0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117번길 8 (미전동)	20081231	가현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1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4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223-399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153번길 25-11 (석남동)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1,53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5	인천광역시 서구 가좌동 178-481	인천광역시 서구 백범로910번길 16-7 (가좌동)	20090710	백범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9,1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6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100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번길 9-1 (석남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7	인천광역시 서구 석남동 322-101	인천광역시 서구 서달로20번길 11 (석남동)	20090706	서달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20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8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46-3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35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19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146-1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64번길 33 (원창동)	20090922	원창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64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0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213-40	인천광역시 서구 파랑로116번안길 3 (원창동)	20171025	파랑로116번길 안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고시일 : 2020-05-18

원번	도로명주소	폐지 사유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사유	비고
1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26 (석남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307번길 26-1 (석남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0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3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77번길 26 (가좌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가정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2동
4	인천광역시 서구 건지로328번길 3-16 (가좌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건지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3,280m지점에서 오른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5	인천광역시 서구 신석로51번길 19 (석남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922	신석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51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6	인천광역시 서구 원척로7번길 8 (가좌동)	건축물대장 말소	20090706	원척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 7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신화자동차공업사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 784호

도로구역(광역시도 56호선)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로2류4호선, 대로2류59호선, 대로3류61호선)사업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의견정취 공고

광역시도 56호선 및 도시계획시설(도로:광2-4, 대2-59, 대3-61 사업명 :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하여 「도로법」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에 따라 실시계획인가를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의제)에 관한 주민(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 공고하오니 사업시행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면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도로구역 결정 내용

①구분	②종류	③노선번호	④노선명	⑤위치	⑥면적(㎡)	⑦기점	⑧종점	⑨주요통과지	⑩총연장(km)
결정	광역시도	56호선		오류동 일원	105,913	오류동 202-8	왕길동 650	-	2.08

○ 도로구역 결정 사유: 도로개설공사

2. 도시관리계획(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광로	2	4	50~53	주간선 도로	16,155	광3-2	금곡동 구역계	일반 도로	-	건설부-54 (70.2.9)	
변경 (시행)	광로	2	4	50~53	주간선 도로	16,155 (370)	광3-2 (오류동691)	금곡동 구역계 (오류동 73-65)	일반 도로	-	-	가감속차로 설치
기정	대로	2	59	30	주간선 도로	5,690	북측행정구역계	백석동 대1-22	일반 도로	-	-	
변경 (시행)	대로	2	59	30	주간선 도로	5,690 (96)	북측행정구역계 (오류동 62-6)	백석동 대1-22 (오류동 60)	일반 도로	-	-	교차로 설치
기정	대로	3	61	25~28	보조간선 도로	4,420	광로 3-23	대로3-59	일반 도로	-	인고 제1998-118호 (1998.6.12)	
변경 (시행)	대로	3	61	25~37 (25~37)	보조간선 도로	4,440 (1,984)	광로 3-23 (왕길동 650)	대로3-59 (오류동 202-8)	일반 도로	-	-	선형변경 연장변경 폭원변경

※ 변경은 금회 시행() 구간에 한함.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광로 2-4	광로 2-4	변경없음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로3-61호선 접속구간 가감속 차로 신설(L=370m)
대로 2-59	대로 2-59	변경없음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한 대로3-61호선 접속구간에 교차로 신설(L=96m)
대로 3-61	대로 3-61	선형변경 연장변경 : 기정 4,420m 변경 4,440m(증) 20m 폭원변경 : 기정 25m ~ 28m 변경 25m ~ 37m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검단양촌IC와 원활한 접속을 위해 접속부 위치 변경으로 인한 도시관리계획변경

3. 사업내용

- 사업명칭 : 검단 양촌IC ~ 봉수대로간 도로개설공사
- 사업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 사업규모 : L=2.08km, A=105,913m²
- 사업기간 : 도로구역결정일로부터(실시계획인가일) ~ 2023. 6.30.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미추홀구 한나루로 607)

5.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붙임과 같음

6. 도면의 열람기간 및 열람장소
 - 열람기간: 2020. 5.18. ~ 2020. 6.3.
 -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도로과, ☎ 032-440-3793),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토목부, ☎ 032-440-5214), 서구청(도시기반과, ☎ 032-560-4485)

7. 도로구역의 위치도 및 도로계획평면도: 게재생략

용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	오류동	198-1	답	2,355.0	582.0	공	인천광역시				
2	오류동	202-8	답	614.0	596.0	공	인천광역시				
3	오류동	198	답	2,561.0	16.0	노*원	인천광역시 서구 오동로 **, ***동 ***호(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 *단지)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	근저당권	
4	오류동	184-10	전	4,245.0	11.0	이*미	인천 서구 오류동 ***				
5	오류동	202	답	1,733.0	1,153.0	송*식	서울특별시 광진구 광나루로 ***, ***동 ****호(구의동, 래미안파크스위 트)				
6	오류동	192	전	2,327.0	1,170.0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				
7	오류동	188	전	370.0	18.0	조*휘	인천 서구 오류동 ***				
8	오류동	산117-7	임	664.0	1.0	이*설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 ***동 ***호(왕길동, 드림파크어울림 *단지)	경인북 부수산동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신문리 ***-*(남산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9	오류동	536-2	도	39.0	1.0	정*현 외 5인	인천광역시 남동구 남동대로***번 길 ****, *동 ***호(간석동, 동성연립)				
10	오류동	875-11	구	8,904.0	430.0	국	국토교통부				
11	오류동	536-3	창	778.0	344.0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오류동)	주식회 사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회 현동*가)(방 이역지점)	근저당권	
12	오류동	536	창	398.0	148.0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오류동)	주식회 사우리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소공로**(회 현동*가)(방 이역지점)	근저당권	
13	오류동	542	대	1,835.0	20.0	이*숙 외 4인	부산광역시 강서구 신호산단*로 **, ***동 ***호(신호동, 부산신호사랑으 로부영*차)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	오류동	539	답	711.0	437.0	이*우 외 2인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15	오류동	540	대	599.0	141.0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16	오류동	543	전	410.0	44.0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17	오류동	544-3	전	70.0	70.0	김*진	인천 서구 오류동 산*****				
18	오류동	544-2	대	728.0	107.0	김*진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오류동)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제금융로* 길 **(여의도동) (청담역지점)	근저당권	
19	오류동	544-4	도	22.0	2.0	김*성	인천광역시 부평구 길주로 ***, 가동 ***호(부개동, 대진아파트)				
20	오류동	560-3	전	536.0	98.0	노*아 외 1인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 ***동 ***호(디자인 시티블루밍)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근저당권	
21	오류동	559-3	대	709.0	297.0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22	오류동	157-1	임	288.0	149.0	김*심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 ***, ***동*** 호(상동, 사랑마 들)				
23	오류동	157	전	532.0	532.0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				
24	오류동	산99-6	임	1,814.0	112.0	홍*근 외 3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별빛마을 ****동 ***호				
25	오류동	산99-7	임	1,657.0	229.0	홍*근 외 3인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 별빛마을 ****동 ***호				
26	오류동	151	전	1,164.0	463.0	배*선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27	오류동	산99-3	임	813.0	507.0	배*선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28	오류동	산219	도	3,174.0	400.0	국	국토교통부				
29	오류동	150	전	420.0	320.0	배*선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30	오류동	산98	임	1,005.0	61.0	조*환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버들로 **, ***동 ****호(오류동, 인천검단힐스테 이트*차*단지)				
31	오류동	산98-2	임	661.0	524.0	이*수	인천 중구 인현동 *				
32	오류동	142-6	임	2,855.0	1,611.0	조*휘 외 2인	인천 서구 오류동 ***~*				
33	오류동	141-2	임	290.0	205.0	조*휘	인천 서구 오류동 ***~*				
34	오류동	202-11	전	4,025.0	201.0	공	인천광역시				
35	오류동	202-9	답	663.0	620.0	공	인천광역시				
36	오류동	202-2	답	358.0	260.0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번길 **(오류동)				
37	오류동	202-3	답	1,233.0	752.0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38	오류동	195	답	1,448.0	769.0	유*주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로 ***, ***동 ****호(신현동, 신현이-편한세 상,하늘채아파 트)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 **(을지로*가) (염창역지점)	근저당권	
39	오류동	194	답	932.0	709.0	노*호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 길 **, ***동 ****호(원당동, 엘지원당자이아 파트)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당하지점)	근저당권	
40	오류동	193	답	2,506.0	1,381.0	이*후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 (방배동)				
41	오류동	525	전	1,071.0	753.0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42	오류동	533	답	6,341.0	611.0	김*원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송로 ***, ***동 ****호(송도동, 송도웰카운티* 단지아파트)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인천법원지 점)	근저당권	
43	오류동	189	답	2,159.0	239.0	조*삭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 (오류동)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가 **~*(검단사거 리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4	오류동	534	답	2,522.0	1,060.0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				
45	오류동	산117-4	임	1,488.0	43.0	조*삭	인천 서구 오류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46	오류동	535	전	3,058.0	1,309.0	김*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용중동 ****- 초정마을동아아 파트 ***동 ****호	농업협 조합회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계산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7	오류동	536-1	전	511.0	433.0	김*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 ***동 ****호(용존동, 초정마을동아아 파트)	농업협 조합회 중앙회	서울특별시 중구 충정로*가 **(계산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48	오류동	565	대	564.0	564.0	이*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번길 **, ***동 ***호(중동, 중 흥마을)	농협은 행주식 회사	서울특별시 중구 통일로 *** (충청로* 가)(부천시지 부)	근저당권	
49	오류동	537-1	답	32.0	32.0	노*연	인천 서구 오류동 ***				
50	오류동	537-2	도	37.0	33.0	노*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 (오류동)				
51	오류동	565-1	대	987.0	944.0	이*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52	오류동	537	대	627.0	607.0	노*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 (오류동)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오왕지 점)	근저당권	
53	오류동	565-2	대	610.0	405.0	문*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연희동, 호반베르디움)	검단신 용협동 조합	인천 서구완정로 *** (마전동)	근저당권	
54	오류동	565-3	대	418.0	68.0	문*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연희동, 호반베르디움)	검단신 용협동 조합	인천 서구완정로 *** (마전동)	근저당권	
55	오류동	537-3	대	739.0	739.0	노*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 길 ** (오류동)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오왕지 점)	근저당권	
56	오류동	538	답	783.0	642.0	신*균 외 4인	인천 서구 오류동 ***				
57	오류동	564	전	1,329.0	1,043.0	윤*태	인천 서구 신현동 *** 한전아파트 에이동 ***호				
58	오류동	540-1	답	244.0	244.0	이*우	인천 서구 오류동 ***				
59	오류동	산 106	임	13,091.0	415.0	평*채 씨 승지공 회 석파김 포 중중	양촌면 대포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60	오류동	563	전	2,883.0	2,883.0	이*목	인천 서구 오류동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원당지 점)	근저당권	
61	오류동	560-2	창	724.0	724.0	김*자	인천 서구 오류동 ***				
62	오류동	562	임	198.0	174.0	김*호 외 1인	서울특별시 성북구 안암동*가 ***-**, ***호				
63	오류동	561	전	145.0	145.0	신*석 외 2인	서울 강서구 방화동 ***-***				
64	오류동	산218	도	397.0	27.0	국	국토교통부				
65	오류동	산107	임	24,198.0	7,717.0	평*신씨 통덕량파 종중	인천 서구 대곡동 ***				
66	오류동	산100	임	1,488.0	642.0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				
67	오류동	산99-2	임	2,579.0	1,567.0	정*원	서울 마포구 서교동 ***-**				
68	오류동	151-1	전	205.0	10.0	최*원	인천 서구 연수구 옥련동 ***-* 영남송도아파트 *동 ***호				
69	오류동	산98-4	임	652.0	522.0	배*선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				
70	오류동	산98-3	임	661.0	33.0	박*원	인천시 인천 북구 심곡동 **-*				
71	오류동	산98-1	임	1,653.0	477.0	이*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로 **, ***호(간석동, 유영아파트)				
72	오류동	141-4	임	3,539.0	1,273.0	조*휘	인천 서구 오류동 ***-*				
73	오류동	141	임	157.0	109.0	조*휘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번길 **(오류동)				
74	오류동	산93-1	임	2,876.0	456.0	조*준	서울 서대문구 교북동 **				
75	오류동	140-12	임	578.0	4.0	이*용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76	오류동	산82-4	임	3,074.0	87.0	공*호 외 3인	인천광역시 연수구 대암로*번길 **(옥련동)				
77	오류동	672-7	임	1,061.0	892.0	이*선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경수대로***번 길 ***-**, *층호(호계동)				
78	오류동	99	대	829.0	66.0	안*희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주안동)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79	오류동	98-12	대	626.0	15.0	정*숙	인천광역시 중구 마장포로 ****(중산동)	강서농 업협동 조합	서울특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방화동)	근저당권 /지상권	
80	오류동	98-10	대	69.0	69.0	안*희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주안동)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강서 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곡남 지점)/서울특 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방화동)	근저당권	
81	오류동	98-13	도	8.0	8.0	안*희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주안동)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강서 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곡남 지점)/서울특 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방화동)	근저당권	
82	오류동	98-11	도	40.0	7.0	안*희 외 1인	인천광역시 남구 석정로***번길 **(주안동)	인천수 산업협 동조합 /강서 농업협 동조합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곡남 지점)/서울특 별시 강서구 금남화로 ****(방화동)	근저당권	
83	오류동	866	도	340.0	36.0	국	국토교통부				
84	오류동	94	전	1,368.0	1,176.0	유*영	인천 서구 오류동 ***				
85	오류동	93	전	613.0	99.0	조*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86	오류동	673	전	257.0	257.0	우*자	인천 서구 검암동 *** 풍림아이원 ***동 ***호				
87	오류동	676	전	120.0	120.0	윤*희	인천 서구 오류동 ***				
88	오류동	676-1	전	177.0	177.0	윤*희	인천 서구 오류동 ***				
89	오류동	93-1	전	48.0	45.0	조*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90	오류동	677-3	전	98.0	98.0	조*준	인천 남동구 간석동 ***-**				
91	오류동	677-2	도	79.0	79.0	국	국토교통부				
92	오류동	677-4	전	69.0	69.0	이*혁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오류동)	검단신 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마전동)	근저당권	
93	오류동	90	장	2,438.0	17.0	주*회사 큐머스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번길 *(오류동)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여의도기업 금융센터)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94	오류동	88-7	도	26.0	4.0	주*회사 큐머스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번길 *(오류동)	주식회 사신한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길 **(태평로*가) (여의도기업 금융센터)	근저당권	
95	오류동	88-2	도	126.0	46.0	윤*옥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96	오류동	88-4	답	104.0	21.0	김*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 길 ** (금곡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가 **(검단지점)	근저당권	
97	오류동	677-1	전	344.0	344.0	이*혁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 (오류동)	검단신 용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완정로 *** (마전동)	근저당권	
98	오류동	88-1	답	253.0	116.0	김*만	인천 서구 금곡동 ***~*	중소기 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가 **(검단지점)	근저당권	
99	오류동	865-13	도	348.0	44.0	국	국토교통부				
100	오류동	678	전	217.0	203.0	김*철	인천 서구 왕길동 ***				
101	오류동	87-1	답	995.0	229.0	김*만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 길 ** (금곡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 중구 을지로*가 **(검단지점)	근저당권	
102	오류동	679	답	168.0	168.0	이*정	인천 서구 오류동 ***				
103	오류동	34-5	구	569.0	118.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04	오류동	679-2	답	34.0	34.0	이*정	인천 서구 오류동 ***				
105	오류동	86-3	답	75.0	75.0	이*희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 (오류동)				
106	오류동	86	전	3,070.0	769.0	서*원	인천 서구 오류동 *				
107	오류동	112-15	답	307.0	19.0	조*상	인천 서구 오류동 ***				
108	오류동	86-5	답	187.0	113.0	서*원	인천 서구 오류동 *				
109	오류동	85	답	3.0	3.0	이*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번길 **, **동 ***호(원미동, 장미연립)	부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중앙지 점)	근저당권	
110	오류동	111-3	답	132.0	8.0	조*상	인천 서구 오류동 ***				
111	오류동	85-1	답	13.0	13.0	이*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번길 **, **동 ***호(원미동, 장미연립)	부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중앙지 점)	근저당권	
112	오류동	73-65	도	12,932.0	8,199.0	공	인천광역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13	오류동	114-2	답	182.0	37.0	박*서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번안길 **(오류동)				
114	오류동	111-1	답	124.0	124.0	조*상	인천 서구 오류리 ***				
115	오류동	84-1	답	113.0	113.0	박*서	인천 서구 오류동 ***				
116	오류동	83-2	답	1.0	1.0	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번길 **(병방동)				
117	오류동	111	답	346.0	264.0	조*상	인천 서구 오류동 ***				
118	오류동	84	답	242.0	242.0	박*서	인천 서구 오류동 ***				
119	오류동	114	답	2,097.0	76.0	박*서	인천 서구 오류동 ***				
120	오류동	81	답	3,569.0	2,534.0	조*상	인천 서구 마전동 ****				
121	오류동	34-17	답	19.0	19.0	농*회사 법인유한 회사별미 식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가좌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지로*가)(주 안공단희망지 점)	근저당권	
122	오류동	34-18	답	197.0	197.0	농*회사 법인유한 회사별미 식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가좌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지로*가)(주 안공단희망지 점)	근저당권	
123	오류동	34-2	답	2,556.0	252.0	농*회사 법인유한 회사별미 식품	인천광역시 서구 원적로**번길 **(가좌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지로*가)(주 안공단희망지 점)	근저당권	
124	오류동	33	답	2,998.0	1,866.0	이*구	인천 서구 오류동 ***				
125	오류동	22-1	전	423.0	423.0	조*현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한경파크빌라 ***호	검 단농 업협동 조합/ 한국전 력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 블럭*롯데(오 왕지점)/서울 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근저당권 /지상권	
126	오류동	22-9	임	3,345.0	356.0	주*회사 신성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 길 ***-*, 가동, 나동 (왕길동)	중소기 업은행 /이*주 /한국 전력공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김포통진지 점)/인천광역 시 서구 서구 신동안길 ***-*(금곡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근저당권 /지상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27	오류동	22-11	임	598.0	598.0	주*회사 신성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 길 **-*, 가동, 나동 (왕길동)	중소기 업은행 /이*주 /한국 전력공 사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김포동진지 점)/인천광역 시 서구 서구 신동안길 *-** (금곡동) /서울 강남구 삼성동 ***/	근저당권 /지상권		
128	오류동	38	답	5,345.0	1,448.0	박*범	인천 서구 오류동 ***					
129	오류동	141-3	임	367.0	367.0	박*숙	인천 서구 오류동 ***-*					
130	오류동	672-8	임	2,438.0	2,130.0	이*준	부천시 원미구 상동 *** 사랑마을 ****동 ***호					
131	오류동	1708-13	공	3,058.6	648.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2	오류동	94-1	전	5.0	5.0	유*영	인천 서구 오류동 ***					
133	오류동	1765	도	24,193.6	3,07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4	오류동	1719-14	공	601.5	11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35	오류동	680	답	52.0	52.0	최*라	전라북도 군산시 공단대로 *** (소룡동)					
136	오류동	34-15	구	144.0	144.0	공	인천광역시					
137	오류동	34-16	구	358.0	5.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38	오류동	86-9	전	295.0	21.0	김*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 ***호 (마전 동)					
139	오류동	85-3	도	1,049.0	1,049.0	공	인천광역시					
140	오류동	681	답	530.0	106.0	이*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번길 **, **동 ***호 (원미동, 장미연립)	부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중앙지 점)	근저당권		
141	오류동	85-4	도	105.0	105.0	공	인천광역시					
142	오류동	681-6	도	27.0	27.0	공	인천광역시					
143	오류동	681-3	답	150.0	81.0	이*범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번길 **, **동 ***호 (원미동, 장미연립)	부천농 업협동 조합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 **** (중앙지 점)	근저당권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44	오류동	696-3	도	69.0	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5	오류동	695-7	도	3.0	3.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6	오류동	694-2	도	15.0	15.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7	오류동	694-7	도	6.0	6.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48	오류동	695-3	대	190.0	39.0	이*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상록마을라이프 아파트 ***-****				
149	오류동	697	대	405.0	120.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50	오류동	694-6	대	96.0	96.0	공	인천광역시				
151	오류동	697-5	대	233.0	233.0	공	인천광역시				
152	오류동	699-4	전	16.0	5.0	박*구	인천 서구 오류동 ***				
153	오류동	697-8	대	32.0	32.0	공	인천광역시				
154	오류동	34-8	구	245.0	245.0	공	인천광역시				
155	오류동	691	도	6,939.0	4,036.0	공	인천광역시				
156	오류동	682-6	답	173.0	173.0	윤*	인천광역시 북구 병방동 ***				
157	오류동	682-8	답	210.0	111.0	김*자 외 2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태화빌라 *동 비**호				
158	오류동	682-2	답	974.0	10.0	김*자 외 2인	인천 남동구 간석동 ***-** 태화빌라 *동 비**호				
159	오류동	682-1	답	1,626.0	515.0	윤*	인천광역시 북구 병방동 ***				
160	오류동	83	답	1,511.0	1,176.0	윤*	인천광역시 계양구 병방동 ***-*				
161	오류동	34-10	구	856.0	342.0	한*농지 개량조합	김포군 김포읍 사우리 ***				
162	오류동	82	전	421.0	268.0	김*호	인천광역시 중구 하늘별빛로 **, ***동 ****호(중산동, 영종힐스테이트)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완정지점)	근저당권 /지상권	
163	오류동	685-5	과	645.0	39.0	공	인천광역시 서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64	오류동	685-15	임	114.0	114.0	공	인천광역시 서구				
165	오류동	685-24	대	1,018.0	74.0	김*용	인천광역시 서구 경단로 ***, ***동 ****호(왕길동, 경단이편한세상 아파트)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중 구남대문로** (을지로*가) (경단사거리지 점)	근저당권	
166	오류동	685-14	임	51.0	51.0	공	인천광역시				
167	오류동	685-22	대	2,597.0	67.0	주*회사 에스씨리 사이클링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번길 ***, 나동, 라동(오류 동)	중 소 기 업 은 행 /주식 회사* 상자원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인천서부산 단지점)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송산로**번길 **(구산동)	근저당권	
168	오류동	33-1	구	30.0	30.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69	오류동	685-23	임	46.0	46.0	신*준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번길 **, *동****호(송내동, 우성아 파트)	중 소 기 업 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김포산단지 점)	근저당권	
170	오류동	산13-4	임	125.0	125.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71	오류동	30	대	967.0	289.0	신*준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번길 **, *동****호(송내동, 우성아 파트)	중 소 기 업 은 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 **(을지로*가)(김포산단지 점)	근저당권	
172	오류동	산12-3	임	238.0	172.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73	오류동	32-1	구	59.0	59.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74	오류동	31-3	구	30.0	9.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75	오류동	31-1	답	1,104.0	1,029.0	조*상	인천 서구 마전동 ***-**				
176	오류동	32	답	1,858.0	1,858.0	조*상	인천 서구 마전동 ***-**				
177	오류동	29-1	답	1,461.0	915.0	김*수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경단*지구**부 력*롯데외**필 지경단힐스테이 트아파트***-** *	부 평 농 업 협 동 조합	인천광역시 부평구 갈산동 *** (제일지점)	근저당권	
178	오류동	29-2	구	119.0	91.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179	오류동	27-1	구	436.0	196.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80	오류동	27-2	전	2,102.0	54.0	강*희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 **** 현대아파트 ***동 ***호				
181	오류동	23-1	전	3,607.0	203.0	이*구	인천 서구 오류동 ***				
182	오류동	22-4	구	175.0	175.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3	오류동	22-5	전	36.0	36.0	신*숙	인천광역시 서구 강남로 ***(석남동)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4	오류동	22-8	전	2,244.0	354.0	신*숙	인천광역시 서구 강남로 ***(석남동)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5	오류동	21	전	522.0	288.0	풍*김씨 취간공파 종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6	오류동	산11-3	임	11,802.0	387.0	풍*김씨 취간공파 종중	인천 서구 대곡동 ***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7	오류동	산11-2	구	1,289.0	707.0	한*농어 촌공사	경기도 의왕시 포일동 ***	한국전 력공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번지	지상권	
188	오류동	39	답	1,878.0	819.0	윤*	인천광역시 북구 병방동 ***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 서구 마전동 ****-	근저당권	
189	오류동	40	답	1,537.0	1,537.0	김*봉 외 3인	인천광역시 서구 가현로 ***, ***동 ****호(마전동, 영진아파트)				
190	오류동	41	전	4,192.0	400.0	안*운	인천 남동구 구월동 ****-				
191	오류동	72-4	답	2,188.0	1,005.0	장*이씨 판서공파 김포종친 회	인천 서구 마전동 ****-				
192	오류동	71-2	전	2,638.0	508.0	신*식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번안길 **(오류동)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근저당권	
193	오류동	63-2	답	496.0	178.0	신*식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번안길 **(오류동)	검단농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근저당권	
194	오류동	62-1	대	1,016.0	120.0	주*회사 준도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오류동)	중소기 업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로**(을 지로*)(김 포지점)	근저당권	
195	오류동	864-2	천	324.0	9.0	국	국토교통부				
196	오류동	63-1	답	685.0	37.0	조*아 외 1인	김포시 통진면 서암리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197	오류동	62-6	도	309.0	309.0	공	인천광역시				
198	오류동	864-11	천	8.0	8.0	국	국토교통부				
199	오류동	0-1	가		83.0	미*기					
200	오류동	42	전	1,026.0	497.0	이*승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 동남아파트 ***동 ****호				
201	오류동	72-5	과	1,176.0	598.0	김*태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 *동 ***호(학익동, 대동아파트)	주식회 사국민 은행	서울특별시 중구 남대문로*가 ***(계산동지 점)	근저당권	
202	오류동	71-1	전	2,727.0	2,324.0	주*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 ***동 ****호(목동, 목 동현대하이페리 온*)				
203	오류동	58	전	3,855.0	1,052.0	윤*근 외 2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대우아파트 ***-****	부평중 업협동 조합	인천 부평구 갈산동 ***	근저당권 /지상권	
204	오류동	59	전	1,841.0	1,841.0	김*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가이아상베르* 차아파트 ***-****	검단중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마전동 검단지구** 블럭*롯데	근저당권 /지상권	
205	오류동	60	전	157.0	157.0	신*식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번안길 **(오류동)	검단중 업협동 조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마전동)	근저당권	
206	오류동	61	잡	606.0	90.0	김*근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 대동아파트 ***동 ***호				
207	오류동	61-3	도	72.0	72.0	공	인천광역시				
208	오류동	52-2	도	12,823.0	3,227.0	공	인천광역시				
209	금곡동	684-12	구	625.0	24.0	국	국토교통부				
210	금곡동	684-9	구	4.0	4.0	국	국토교통부				
211	금곡동	140-8	답	12.0	12.0	신*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별로 **, ***동***호(효성동, 뉴서울 아파트)				
212	금곡동	140-1	답	548.0	56.0	신*환	인천광역시 계양구 새별로 **, ***동***호(효성동, 뉴서울 아파트)				
213	금곡동	683-3	도	16.0	8.0	국	국토교통부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 적 (㎡)	편입면적 (㎡)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권리관계	
214	금곡동	683	도	19.0	11.0	국	국토교통부				
215	왕길동	650	도	23,709.0	2,804.0	공	인천광역시				
216	왕길동	633-4	공	2,742.1	575.0	공	인천광역시				

지장물 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	오류동	192	창고	철파이프/ 천막	172㎡	172㎡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컨테이너		19㎡	19㎡			
			이동식화장실		1식	1식			
			물탱크		1식	1식			
2	오류동	525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 비닐	583㎡	583㎡	이*미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관상수		3주	3주			
3	오류동	53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143㎡	143㎡	조*준	인천 서구 오류동 ***	
4	오류동	536-1	컨테이너 (2동)		33㎡	33㎡	김*연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새로 ***, ***동 ****호(용존동,초정마을 동아아파트)	
			가건물	철파이프/ 함석	13㎡	13㎡			
5	오류동	565	사무실	조립식/ 함석	265㎡	265㎡	이*하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중동로***번길 **,***동 ***호(중동,중흥마을)	
6	오류동	565-1	창고	조립식/ 천막	466㎡	466㎡	이*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	
			창고	철파이프/ 천막	47㎡	47㎡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폐기물수거함		1식	1식			
7	오류동	565-2	창고 (3동)	철골/함석	258㎡	258㎡	문*수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에메랄드로 ***, ***동 ****호(연희동,호반베르 디움)	
			창고	철파이프/ 천막	111㎡	111㎡			
8	오류동	537	사무실	조립식/ 함석	216㎡	216㎡	노*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길 **(오류동)	
			창고	철골/함석	236㎡	236㎡			
			컨테이너		17㎡	17㎡			
			창고 (3동)	철파이프/ 천막	244㎡	244㎡			
9	오류동	537-3	창고	조립식/ 함석	313㎡	313㎡	노*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길 **(오류동)	
10	오류동	536-3	창고	철파이프/ 천막	188㎡	188㎡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길 **(오류동)	
			컨테이너 (2동)		33㎡	33㎡			
11	오류동	536	창고	철골/함석	173㎡	173㎡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길 **(오류동)	
			창고	철파이프/ 천막	148㎡	148㎡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12	오류동	536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 비닐	340㎡	340㎡	정*현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안길 **(오류동)	
13	오류동	540	가옥	조적조/ 루핑	167㎡	167㎡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14	오류동	563	컨테이너 (3동)		51㎡	51㎡	이*목	인천 서구 오류동 ***	
			천막	철파이프/ 천막	84㎡	84㎡			
			이동식화장실		1식	1식			
15	오류동	563	사무실	조립식/ 함석	98㎡	98㎡	이*목	인천 서구 오류동 ***	
			가건물 (3동)	철파이프/ 스레트	618㎡	618㎡			
			천막	철파이프/ 천막	50㎡	50㎡			
			컨테이너		17㎡	17㎡			
			배합기		1식	1식			
16	오류동	560-3	창고	철파이프/ 스레트	283㎡	283㎡	노*아 외 1인	경기도 안성시 공도읍 공도로 ***,***동 ****호(디자인시티블루 밍)	
17	오류동	560-2	창고	블록조/ 함석	202㎡	202㎡	김*자	인천 서구 오류동 ***	
			천막 (2동)	철파이프/ 천막	73㎡	73㎡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컨테이너 (2동)		34㎡	34㎡			
18	오류동	559-3	가옥	블록조/ 스레트	173㎡	173㎡	이*우	인천광역시 서구 백석산로**번길 **(오류동)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16㎡	16㎡			
19	오류동	산107	가옥	컨테이너/ 함석	107㎡	107㎡	평*신씨통 덕량파종 중	인천 서구 대곡동 ***	
20	오류동	677-1	가옥	블록조/ 함석	112㎡	112㎡	이*혁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봉화로 ***(오류동)	
21	오류동	86-9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루핑	20㎡	20㎡	김*미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번길 **,***호(마전동)	
22	오류동	695-3	컨테이너		33㎡	33㎡	이*선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상록마을라이프아파트 ***-****	
			가건물 (4동)	철파이프/ 함석	62㎡	62㎡			
23	오류동	697-5	컨테이너		57㎡	57㎡	공	인천광역시	
			가건물 (2동)	철파이프/ 함석	234㎡	234㎡			
24	오류동	685-2 4	컨테이너 (2동)		36㎡	36㎡	김*용	인천광역시 서구 검단로 ***, ***동 ****호(왕길동,검단이편 한세상아파트)	
25	오류동	30	창고	철파이프/ 천막	242㎡	242㎡	신*준	경기도 부천시 경인로**번길 **, *동****호(송내동,우 성아파트)	
26	오류동	33	창고 (2동)	철골/함석	601㎡	601㎡	이*구	인천 서구 오류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컨테이너		18㎡	18㎡			
27	오류동	22-1	컨테이너		16㎡	16㎡	조*현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 한경파크빌라 ***호	
28	오류동	22-9	컨테이너		18㎡	18㎡	주식회사 신*건설	인천광역시 서구 원당대로***번길 **-*,가동,나동(왕길동)	
29	오류동	21	컨테이너		17㎡	17㎡	풍*김씨취 간공파중 중	인천광역시 서구 대곡동 ***	
			가건물	철파이프/ 함석	15㎡	15㎡			
			관상수		24주	24주			
			물탱크		1식	1식			
30	오류동	41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53㎡	53㎡	안*운	인천 남동구 구월동 ****-*	
			컨테이너 (4동)		62㎡	62㎡			
			가건물	철파이프/ 함석	17㎡	17㎡			
			관상수		12주	12주			
31	오류동	72-5	관상수		32주	32주	김*태	인천광역시 남구 매소홀로 ***,*동 ***호(학익동,대동아파 트)	
32	오류동	72-4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7㎡	7㎡	장*이씨판 서공파김 포중친회	인천 서구 마전동 ****-**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가건물	목조/함석	7㎡	7㎡			
33	오류동	71-1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45㎡	45㎡	주*분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 ***,***동 ****호(목동,목동현대하 이페리온*)	
			가건물 (2동)	목조/함석	30㎡	30㎡			
34	오류동	71-2	비닐하우스 (2동)	철파이프/ 비닐	172㎡	172㎡	신*식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 **번안길 **(오류동)	
			물탱크		2식	2식			
35	오류동	58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13㎡	13㎡	윤*근 외 2인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동 *** 대우아파트 ****-*****	
			컨테이너		22㎡	22㎡			
			가건물 (3동)	목조/함석	17㎡	17㎡			
			관상수		50주	50주			
36	오류동	59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비닐	44㎡	44㎡	김*채	인천광역시 서구 경서동 ****- 가이아상베르*차아파트 ****-*****	
			가건물	철파이프/ 함석	34㎡	34㎡			
37	오류동	63-2	비닐하우스	철파이프	61㎡	61㎡	신*식 외 1인	인천광역시 서구 단봉로**번안길 **(오류동)	
			물탱크		2식	2식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연면적	저축연 면적	소유자		비고
							성명	주소	
38	오류동	52-2	컨테이너 (4동)		68㎡	68㎡	공	인천광역시	
			가건물 (3동)	철파이프/ 함석	60㎡	60㎡			
39	왕길동	650	사무실 (2동)	조립식/함 석	288㎡	288㎡	공	인천광역시	
			천막	철파이프/ 천막	6㎡	6㎡			
40	왕길동	650	컨테이너 (3동)		172㎡	172㎡	공	인천광역시	
			가건물	조립식/ 함석	46㎡	46㎡			
41	오류동	62-1	창고	철파이프/ 천막	214㎡	214㎡	주식회사* 도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오류동)	
42	오류동	62-6	컨테이너 (6동)		100㎡	100㎡	공	인천광역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 제출서

사업명	광역시도 56호선 및 검단양촌IC~봉수대로 간 도로개설공사	
사업장 위치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일원	
사업자시행자	인천광역시장(종합건설본부장)	
공람기간	2020. 5.18. ~ 2020. 6. 3. (14일 이상)	
관련지번 (소유지번)	인천광역시	구 동 번지
의견제출자	<input type="checkbox"/> 소유자 <input type="checkbox"/> 관계인 (해당사항에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성명	생년월일
	주소 (주민등록상 현주소)	연락처
사업인정에 대한 의견 ※ 소유자 및 관계인, 이해관계가 있는자 작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사업인정에 관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0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인 천 광 역 시 서 구 청 장 귀하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0-795호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2-85호선, 소로1-6호선)사업 실시계획 및 사업인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열람·공고

인천직할시고시 제1988-1406호(1988.12.02.)호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00-172(2000.10.06)호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2-85호선, 소로1-6호선,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중로2-85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 사업을 시행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제9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9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위한 서류 열람을 공고합니다.

관계도서는 서구청(도시개발과 ☎560-4762, 도시기반과 ☎560-4522)에 갖추어 두고 일반인에게 보여드리니 의견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 5. 18.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위치: 중로2-85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27번지 일원
- 소로1-6호선 :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4-16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 중로2-85호선, 소로1-6호선)

○ 명칭: 도시계획시설(중로2-85호선 외 1개노선)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또는 규모

구분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연장(m)				면적 (m ²)	
				결정	금회	결정	기시행	금회	잔여		
당초	도로	중로	2	85	15	15	236	-	-	236	
시행	도로	중로	2	85	15	15	236	-	236	-	3,613
당초	도로	소로	1	6	10	10	294	167	-	127	
시행	도로	소로	1	6	10	10	294	167	127	-	1,382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서구 서곶로 307(심곡동, 서구청)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 인가일 ~ 2025. 12. 31.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외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의 성명·주소

○ 따로 붙임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9조에 따른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열람 장소 및 기간

- 장소: 서구청 본관4층 도시개발과, 도시기반과
- 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조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중로2-85호선)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창동	1-1161	도	3,711.6	8.0	**** 주택 공사	경상남도 진주시 충의로 **				
2	"	4-27	잡	152.0	152.0	국	기획재정부				
3	"	4-12	전	51.0	51.0	김*자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				
4	"	4-7	답	3,954.0	3,388.0	권*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				
5	"	52-2	답	90.0	14.0	재단법 인세계 기독교 ****협 회유지 재단	서울 용산구 청과동*가 **.*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소로1-6호선)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소재지	지 번	지 목	면적 (㎡)		소 유 자		관 계 인			비고
				지적	편입	성 명	주 소	성명 또는 명칭	주소	권리의 종류 및 내용	
1	원창동	4-16	답	1,275.0	1,275.0	권*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				
2	"	4-7	답	3,954.0	107.0	권*성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로 ***, **				

수용 또는 사용할 물건조서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중로2-85호선)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4-27	간이 화장실		2 EA		소유자 불명				
			안전제 일웬스	철재	25.06 m ²						
			메쉬 웬스	철재	5.70 m ²						
			폐기물	콘크리트	1.95 m ³						
2	"	4	자바라	철재	1 EA		**중기 (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번길 **			
			간판	철재	1 EA						
			간판	철재	1 EA						
			기둥	철재	2 EA						
3	"	4-7	컨테이너		27.00 m ²		**지이 (주)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번길 *			
			울타리	H빔	47.60 m ²						
			건설 폐기물		19.70 m ²						
			폐기물	콘크리트	6 EA						
4	"	4-7	철재	카스토퍼	1 EA		**라이팅(주)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 **번길 **			
5	"	4-7	컨테이너		18.00m ²		**환경 ENG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로**번길 **			
			가림막	철재	7.60 m ²						
			가림막	철재	18.00 m ²						
			가림막	철재	23.20 m ²						
6	"	55-11	데크	목재	1 EA		***24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7	"	52-2	간이 화장실		1 EA		(주)***공업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천막		15.20 m ²						
			메쉬 웬스		14.45 m ²						

□ 사업명 : 도시계획시설(소로1-6호선)개설공사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연번	소재지	지번	물건의 종류	구조 및 규격	수량	실제 이용 상황	소유자		관계인		비고
							성명	주소	성명	주소	
1	원창동	4-7	간판	철재	1 EA		(주)**하이텍	인천광역시 원창로**번길**			
2	“	4-16	간판	철재	1 EA		(주)**하이텍	인천광역시 원창로**번길**			
			철판	철재	1 EA						
3	“	4-16	그레이팅	철재	10.50 m		**지이(주)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번길 **, ***번길 *			
			H빔	철재	13 EA						
			가림막	철재	39.03 m ²						
			H빔	웬스	8 EA						
			가림막	철재	72.28 m ²						
			방진망		148.75 m ²						
폐기물	콘크리트	23.60 m ³									